

예술인복지법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

A Policy Plan for the Improvement of Artists's Welfare Law

노문이*, 헌택수*, 이정서**
한국사회문제연구원*, 조선이공대 사회복지과**

MooNee Noh(jinzajum@naver.com)*, TaikSoo Hyun(hyunts1@hanmail.net)*,
JeongSeo Lee(jslee2010@hanmail.net)**

요약

본 연구에서는 우선 예술인복지법의 쟁점과 한계를 분석하였다. 그것은 예술인 근로성 및 지위의 문제이고, 사회보험 가입절차의 문제 등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자료를 수집하여 정리, 분석, 평가하는 문헌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극예술인의 사회보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해결방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사회보험 법상 예술인 지위의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보험가입 절차는 고용노동부를 통한 우선 가입 후 문화체육관광부의 사후 심사 방식으로 변경하도록 한다. 한편 극장 임대인이 극단에 극장을 임대해줄 시에 기존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가입을 의무화 하도록 한다. 새로운 보험 수식 제안으로는, 예술인 근로의 특수성을 감안한 새로운 고용보험수식과 산업재해보상 보험료 산출 공식이 있다. 끝으로 제작준비기간 및 부업을 인정해주는 특례방식을 도입이 필요하다.

■ 중심어 : | 예술인 복지법 | 사회보험 |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issue and limit of artists's Welfare Law. The issue is about artists' labor, their status, and the process for buying social insurance. In this study, we used the literature method the existing data collection clean up, analysis, and evaluating. The solution plan for the vitalization of the guarantee of social insurance for stage actors is as follows. First, based on social insurance law, is to grant an exceptional status to stage artists. Second, the process for buying social insurance has to be changed to posterior judgement by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fter buying social insurance through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nd when a theater company as a leaseholder rent a theater, it should be mandatory for it to get existing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law. As a new numerical formula, there are an unemployment insurance numerical formula considering distinct characteristics of artists' labor and a formula of calculating insurance fee for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Last, there needs to be an introduction of exceptional method allowing a preparatory period for the production of a play and stage actors' side job.

■ keyword : | Artists's Welfare Law | Social Insurance |

I. 서론

예술가들의 기초적인 삶을 위한 사회적 보장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빈곤과 질병으로 인한 극작가 최고는 씨의 아사(餓死) 사건 이후 예술인의 신분과 활동을 보장하는 사회적 법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형성되었다. 우리나라 비정규직 예술종사자의 사회보험법 이용에 관한 논의는 2012년 11월 예술인복지법의 발효와 함께 법안 내 예술인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가 규정되고서야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이 법을 필두로 비정규직 예술가를 근로자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예술인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가입비가 일부 지원되기는 하지만, 비정규직 예술종사자의 사회보험법 이용 가능성과 그 지원정책 개선은 미진한 상황이다. 즉 국내 4대 사회보험 전반에 걸친 가입을 보장하는 것이 아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예술인코드 추가만이 이루어졌을 뿐이다. 법무부, 재정부, 노동부의 반대 의견을 설득시키지 못한 채 법률이 통과되었다. 현재 비정규직 예술인의 사회보험 보장과 가입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기금지원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통계에서는 비정규직 예술인을 530,000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으니, 예술인경력증명을 받지 못하는 영세 예술인의 수나, 신종 예술직군으로 등장한 인터넷을 통해 작품을 발표하는 예술종사자까지 추산해 보았을 때에, 사실상 비정규직 예술인의 사회보험 가입에 관한 보장은 사문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예술인 복지법 개선을 위한 연구가 시작되었어도 해외 사례 소개나 단순사례 제시에 머물렀고, 예술인 사회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제안 연구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예술인복지법에서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핵심 쟁점을 분석하여 정리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실제적인 정책 방안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지적하며 예술인복지법의 문제와 쟁점을 명확하게 하고, 연극예술 종사자를 중심으로 그들의 사회보험 보장을 위해서 해결방안을 제안하는 데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를 수집하여 정리, 분석, 평가하는 문헌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함의는 정책 현장에서 금세 활용할 수 있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방안연구라는 점에 있다, 기존연구와 차별성있는 연구 공헌점은 예술인 사회보장을 위한 고용보험 수식제안 및 산업재해보험 수식 제안 등 구체적인 수식을 제안을 하고 있는 점에 있다. 본 연구는 정책방안에 대한 산출연구(study of product)로서 분석틀은 Gilbert 와 Terrell 의 할당, 급여, 전달, 재원의 네가지 요소를 활용하였다[1].

II. 선행연구 검토

2009년 「예술인복지법안」이 발의되며 예술인의 사회보장에 대한 정책적 논의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최한준(2010)[2]은 예술인복지법안의 범리를 해석하였으나 실질적인 사회보장방안에 대해 논의하지 못했다. 배일성(2010)[3]은 예술인의 사회보험적 위치에 대한 논의를 제안하기도 하였으나 단순 사례조사에 그쳤다. 김영우(2011)[4]는 독일의 예술가보험법을 소개하면서 예술인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회보험법적 논의를 진행하였으나 예술인복지법을 고려하지 않았다.

2012년 예술인복지법 통과 연도에 김태환 등(2012)[5], 서희원(2012)[6], 양창욱(2012)[7]의 연구는, 예술인복지법이 갖는 한계와 더불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들의 연구는 법적 한계와 개선책을 제시했으나 기존 연구와의 차이점을 찾기 어렵다. 나은(2012)[8]은 해외의 사례와 함께 국내 예술인의 법적지위를 연구하였는데, 마찬가지로 과거의 연구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한국노동연구원의 문화체육관광부의 용역연구(2012)[9]는 양적연구와 질적연구를 병행하여, 수치 만으로만 표현할 수 없는 신진예술가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연극계의 특수성과 사용종속성을 규정하는 데에 큰 기여를 하였다. 이 연구는 예술인복지법의 발효 이후 예술 활동 인정방식의 변화와 표준계약서 개선 작업에 있어 실증적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장홍근(2012)[10]은 연극예술종사자의 예술커리어 관리 실태를 조명하였다. 2013년 예술인복지법이 본격

적으로 시행되고 예술인복지법이 가진 문제점의 원인을 분석하는 연구가 발표된다[11][12]. 심희철 등(2014)[13]의 연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포괄하여 연구는 실질적으로는 연극인의 삶 개선에 진전을 주지 못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의 문제점은 예술인복지법제정의 핵심 원인인 사회보험 활성화 연구가 미비했다는 점이다.

III. 예술인복지법의 사회보험적 쟁점

사회보험보장과 관련된 예술인복지지는 예술인의 근로성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국가에서 관장하는 사회보험의 대상자가 되게끔 하는 제도이다.

예술인복지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창작지원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비 지원을 통해 공공부조로서의 복지정책을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2015년 두루누리사업에 예술인이 포함되면서 임금이 월 140만 원 미만인 예술인의 경우에는, 그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가입비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다. 표면적으로 보기에 예술인의 사회보험가입 보장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이나, 사회보험의 내부적 개정이 아닌, 심사를 통해 정부 사업기금을 제공하는 것이며, 14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예술인은 해당 제도의 수혜자가 될 수 없으므로 사회보험보장의 영역으로 보기에는 어렵다.

비정규직 예술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예술인복지재단을 경유해서 사회보험을 가입해야 할 뿐 아니라, 사전에 예술인 경력증명을 통해 국가가 인정하는 예술인임을 증명해야 하는 절차가 존재한다. 140만 원 이하의 소득을 올리며, 근로자성을 인정받고, 표준계약을 작성한 예술인의 경우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의 50% 지원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예술활동을 증명 받지 못한 근로자일지라도 정부에서 권장하는 예술인 표준계약을 작성할 경우,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지급을 받을 수 있다.

1. 예술인의 지위 적용의 문제

근무형태의 제한 없이 모든 예술인이 가입 가능한 사회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이 있다. 그 중에서 현재까지 법령으로 예술인 가입 보장을 명시하는 보험의 종류는 산재보험이 유일하다

본래 예술인복지법의 발의 당시, 사회보험을 적용하는 데에 있어 예술인을 근로자로 인정하는 법안을 담는 것이 주요 목표였으나, 고용노동부의 반대로 현행법에서는 이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예술인은 독립된 사업을 하는 하나의 자영자로서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예술인의 계약실태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예술인 전체를 자영인으로 취급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14].

예술인의 지위 적용방식의 문제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직종코드에서도 지적될 수 있다. 예술인복지법의 정의에서 말하는 보편적인 뉘앙스의 예술인과 달리,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정의하는 연극예술인의 사회적 지위는 '오락'에 한정되어 있으며, 이들의 '예술전문성' 역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도박장을 운영하는 자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비정규직 연극예술종사자의 실태이다.

2. 가입 절차의 문제

예술인 직종코드를 통해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과 고용보험 지원 사업을 수혜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예술인 경력인증절차를 밟아야 한다. 예술인경력인정을 받은 예술인은 그 사후에서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가입을 진행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절차는 다양한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생성할 수 있다.

첫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가입 시기의 지연이다. 사고에 의해 발생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수혜는, 근무가 시작된 날 바로 가입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며 안전한 방식의 보장방식이다. 그러나 아직 예술인 경력증명을 받지 않은 예술인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최장 4주의 경력 인증 심사기간이 소요되며, 가입하고자 하는 예술인의 경우에도 사회보험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이다.

둘째, 신진예술가의 가입 불가능이다. 연극예술종사자가 예술인 경력인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존 작품 경력이 3편 이상(기획, 작가의 경우 1편 이상) 존재해야 한다. 때문에 공정한 계약을 통해 데뷔하는 1번째, 2번째 작품을 진행하는 신진예술가의 경우, 그 어떤 방식으로든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할 수 없는 문제가 존재하게 된다.

셋째, 경력단절 예술가의 제도 진입 불가능 문제가 존재한다. 3년 내의 경력 활동만을 공인해주고 있기 때문에, 예술강사로 재직하다 연극공연에 복귀하여도 제도의 수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요컨대, 현재의 가입절차는 사회보장을 지원하기 보다는, 영세 예술가로 하여금 하나의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3. 근로자성 인정과 가입강제불가의 문제

예술인복지법의 근로자성 인정에 관한 문제는, 예술인의 사회보험 보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규정되어야 할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예술인복지법안은 모두 예술인을 근로자로 규정하고자 했다. 하지만,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 현재 비정규직 예술인의 법적지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내에서만, 자영업자로 인정되고 있다.

그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지위로 예술인을 규정할 경우, 프로젝트 단위로 예술업을 진행하는 예술인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문제다. 11 개에 이르는 예술분야를 하나의 지위로 포괄하고자 한 데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두 번째 문제점은, 예술인의 경우 부업의 비율이 높고, 중복 계약의 경우가 많아 사용자(고용주)를 특정할 수 없다는 반대에 부딪혀 근로자성의 인정이 어렵다는 점이다. 즉 고용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논쟁인데, 사실, 연극예술종사자의 경우, 대부분의 종사자의 이용자가 명확하다. 조각가나 미술작가와 다르게 그 행위가 특정한 장소(극장 또는 가설극장)와 계약을 하며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사실 예술인의 사회보험 활성화에 대한 과제는, 근로

자성의 인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어려운 문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하는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산재보험의 가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례제도를 통해 가입이 가능한 제도이다. 때문에 그 가입여부를 강제할 수 없다. 한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에도 별도의 신청을 통해 자신을 당연가입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강제가입의 대상이 된다.

4. 고용보험의 문제

고용보험법 수혜대상의 경우에는 실업의 조건을 충족하고 업무개시일에 가입절차를 진행하였다고 해서,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18개월간 180일 이상의 보험료 납입기록이 있어야 하는데, 예술인의 경우 그 조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형태가 대부분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연극예술종사자의 연간 연극활동일은 연간 221일로 나타나고 있으나, 임금의 지급은 공연일에만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예술가가 18개월동안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6개월 이상의 고용보험을 납입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의 실업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적극적인 구직활동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실업급여 지급 기준 역시 모호하다.

V. 예술인 사회보험 활성화를 위한 방안

1. 사회보험법상 예술인 지위 다양화

고용노동부의 형평성 저해를 연유로 사회보험법에서 예술인을 자영업자로 분류한 것은 오히려 형평성이 어긋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예술인을 하나의 자영업자로 볼 지라도, 별도의 자영자 직종코드가 필요하며 예술 장르가 각기 고유한 특성을 갖기 때문에 장르별로 다른 구분이 필요할 것이다. 즉, 직종에 특화된 사회보험적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예술인 특례제도가 존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즉, 자영업 예술인의 직종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예술인 직종을 구분하여, 피고용관계가 명확한 예술인의 산업재해보험을 강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아직까지는 신진예술가와 경력단절예술가를 위한 경력인정제도가 마련되어있지 않은 현실이다. 사회보험법의 가입에 있어, 예술인 경력인증제도를 사전심의 받아야 하는 문제는, 영세예술인들에게 큰 제도적 장벽을 만들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 대안이 제안될 수 있다. 첫째, 신진 예술인을 위한 특혜 제도이다. 국가에서 지정하는 예술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한 자에게, 일정기간의 임시 예술경력 인증기간을 수여하는 방식이다. 신진예술인에 대한 경력인증 면제 제도는 독일과 네덜란드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둘째 사회보험가입을 위한 경력인증제도와 현행 예술인 경력인증제도를 병행하여 운영하는 방법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는 창작지원기금의 선불지급 특성상, 첫 번째 제도를 도입할 경우 단순히 연극학과를 졸업하며, 예술인이 될 의지가 없지만 예술인 경력인증 특례를 통해 창작지원기금을 부정수급하거나, 경력단절 예술인의 부정수급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2. 사회보험 가입절차 개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시행령 내에서, 예술인은 가입을 할 수 있도록 명시 되어 있긴 하나, 신청인의 가입 가능여부에 대한 가치 판단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관으로 되어 있다.

산업재해는 천재지변이나 예측 불가능한 사고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수혜의 시기를 예측할 수 없어 즉시적인 가입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중심사제도 때문에 예술인의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을 신청하기까지는 1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된다.

가입 과정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전 승인 방식에서, 고용노동부를 통한 우선 가입 후 문화체육관광부의 사후 심사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예술인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바람직한 방향이 될 수 있다.

3. 사회보험 가입 의무화

예술직종의 특성인 비정규직 업무종사로 인해 고용

보험의 적용은 어려울지 몰라도, 기존 법안에서 적용 대상이 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극장 임대인이 극단에 극장을 임대해줄 시에 그 가입을 의무화 하여야 한다.

연극예술의 특성상 특정 장소에 의해 공연이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극장 임대인을 이용자로 볼 수 있다. 실제로, 2011년에는 예술인복지재단에서도 극장이 임차인을 위해 0.33%의 가입비를 납부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무산되기도 하였다. 즉, 극장의 임대를 위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표준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하다. 결과적으로는 연극예술인의 고용관계 실태가 조금 더 투명해질 수 있다. 극장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은, 독일과 프랑스에서 큰 문제없이 정착되었다.

물론, 실질적인 고용주는 극단으로 극단이 보험가입의 의무를 지는 것이 연극제작환경의 특성상 적합할지 모른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특성상 재해가 발생하는 곳의 주체가 보험을 가입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극장임대인이 임차하는 극단의 고용 인원에게 보험가입을 강제하는 법안이 필수적일 것이다.

향후 예술인복지재단에서도 극장이 임차인을 위해 0.33%의 가입비를 납부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이 역시도 강제적인 법률에 의한 것이 아닌 권장사항이 될 가능성이 높아 실효성에 한계를 가진다. 그러므로 예술인복지회의 사업 확장 측면이 아닌 노동법적인 개선을 위해 예술인의 특성별 법적 지위를 재정의 하여야 한다.

물론, 실질적인 고용주는 극단으로, 극단이 보험가입의 의무를 지는 것이 연극제작환경의 특성 상 적합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 경우 국가적인 의무법령을 제정할 경우, 극단의 설립에 관해 정부의 개입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특성상 재해가 발생하는 곳의 주체가 보험을 가입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극장임대인이 임차하는 극단의 고용 인원에게 보험가입을 강제하는 법안이 필수적일 것이다.

4. 직업 특성에 따른 예술인 특례제도

현행 사회보험제도의 경우에는, 예술인이 그 가입대상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수혜의 대상이 되지 못할 가능

성이 있어, 이용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사회보험적 특례를 제안하고자 한다.

4.1 고용보험 수식 제안

기존 고용보험법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m = (mw + e) \times 0.0055$$

기존 고용보험법 계산식.

$$m = (mw + e) \times 0.0055$$

m=월보험료,

mw=월 보수액,

e=기타수당

기존 고용보험의 경우 1년에 180일 이상을 일한 65세 미만의 근로자를 가입범주에 포함시켰다.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 추산 년 평균 4회의 공연을 올리는 연극 예술 근로자는 고용보험을 가입하여도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앞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마찬가지로 고용보험법에는 누진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데, 그 원인은 나머지 2가지의 사회보험인 건강보험법과 국민연금법에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연극 예술 근로자의 노동시간에 대해 추정해보기로 하였다. 대학로문화지구 평균공연일인 11일의 공연을 제작한다고 가정하자. 평균 1달여의 연습기간을 일당 최소 5시간으로 산정하였을 경우, 40여일간 200시간의 근무시간이 발생한다. 문화관광부 실태조사 결과 연극 예술 근로자는 연 평균 4회의 공연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연극 예술 근로자는 평균치를 토대로 최소 추정결과 총 800시간의 근무를 하는 것으로 추정될 수 있다.

위의 추정 결과 이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최저근무시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입 조건의 조율을 통해 연극 예술 근로자 역시 고용보험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한다. 이에 제안하고자 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m = (wh + c) \times \frac{h}{3} \times 0.011$$

고용보험 예술인 가입 제안 수식.

wh= 시급,

c=저작권수입,

h=총 근로시간

연극 예술인 근로자의 경우 종사 일수는 적으나 종사 시간이 길다. 그러므로 수입을 시급으로 환산하여 기타 저작물 수입과 합산하여, 일한 시간을 곱한 뒤 이를 최저 일일 근로인정시간보다 높은 3시간으로 정해 나눈다. 1.1%의 비용부담은, 일반 상시고용 근로자의 경우 50%를 고용주가 부담하지만, 연극 예술 근로자의 경우 고용관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전액 부담하기로 제안한다. 그러나 실업급여와 직결된 사항이므로 가입의 저항이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연극 예술 근로자의 경우, 기존 수혜 개월인 6개월이 아닌 시간당 근무시간의 1/3을 적용한 기간만큼의 일수가 180일을 초과할 경우 그 일수만큼을 실업급여로 지원하고, 실업기간 동안의 직업교육은 문화예술인의 특성에 맞는 예술공공사업에 투입하게 한다면, 재원 상실로 인한 반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근무시간의 일일 계산의 비율을 연극인에게 이상적인 3시간으로 가정하였으나, 이는 국가재원의 상황에 따라 4시간 또는 5시간으로 설정할 경우에도 연극인이 수혜대상의 범위가 되어 이상적으로 제도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2 산업재해보험법 수식 제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세부 규칙에서, 예술인 직종으로 가입을 할 수 있도록 명시 되어 있긴 하나, 예술인 직종에 대한 가치 판단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관으로 되어 있다. 이는 정부의 예술개입에 대한 하나의 견제 장치 또는 존중장치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심사를 통해서만 가입자의 승인판단여부를 고용노동부로 이관되도록 장치해 놓은 것이다.

이중심사제도 때문에 예술인의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에는 약 1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된다. 산업재해는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가 많기 때문에, 수혜의 시기를 예측할 수 없어, 즉시적인 가입이 중요함에 불구하

고 말이다. 또한, 타 사회보험과 달리 재해판정여부가 복잡해 부정수급의 비율이 매우 낮다. 고용보험의 수혜 대상이 되는 실업상황은 대부분 예측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나, 산업재해보상금의 경우 천재지변이나 안전 불감증으로 일어나는 재해로서 수혜자의 조차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하는 예술가의 지위를 상승시키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가입 과정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전 승인 방식에서, 고용노동부를 통한 우선 가입 후 문화체육관광부의 사후 심사 방식으로 변경해야 하는 것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또 다른 문제점은 소득구간의 누진 적용 없이 일괄적으로 1%의 임금을 12개월 내내 정수해간다는 문제점이 있다. 연극예술 근로자의 경우 근로성조차 충족시킬 수 없는 근로자가 다수이며, 상시 고용비중비율이 매우 드물다.

예술인 고용자 전체를 통틀어도 문화체육관광부 추산 상시고용인 비율은 23%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한번 가입 시 등급의 변경이 불가능하고 1년 내내 납입해야 하기 때문에 수입이 매우 적은 연극 예술 근로자는 가입의 필요성을 인지하더라도 가입을 보류할 가능성이 크다.

기존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료 산출 공식은 다음과 같다.

$$Y = W \times \frac{10}{1000} \times 12$$

수식 15. 현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연간보험료 산출식 Y=연간보험료,

W=임금

이에 대한 연극예술근로자의 보험료 탄력적 적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수식을 고안하였다.

먼저, 등급이 7등급 이하일 경우

$$Y = W \times \frac{10}{1000} \times \frac{n}{10} \times \frac{t}{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등급기준 7등급 이하일 경우 보험료 산출 공식 제안

n=등급,

t=근무일수

다음은 등급이 8등급 이상일 경우

$$Y = W \times \frac{10}{1000} \times \frac{t}{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등급기준 7등급 이하일 경우 보험료 산출 공식 제안

7등급 이하 가입자의 경우 1인당 평균 GDP 미만의 수입을 올리는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가입료의 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 자발가입을 늘리도록 고안하였으며, 8등급 이상의 가입자의 경우 고액의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으므로 기존의 계산 공식을 따랐다. 또한 연극예술종사자의 경우 대부분이 간헐적인 공연을 통해 수입을 올리고 있으므로, 총 가입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도록 고안하였다. 또한 8등급과 7등급간의 누진세율이 갑작스럽게 차이가 나 계층간의 괴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될 수 있으나, 누진세율 적용 공식을 사용하더라도 8등급부터는 0.8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책정되어 금액에 큰 차이점이 없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경우 의료보험 급여와 달리 가입비에 따른 수혜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발은 적을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은 식을 구성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부작용으로 언급된 기술제작진의 법적 지위 약화를 개선하고, 비현실적인 연극예술인의 지위 변경을 위해 필자는 현실적인 법적 범위내에서 구체적인 연극예술근로자의 법적 위치를 제안하였다.

첫째, 창작진 및 실연진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예술인법적지위를 재적용하여, 특수임대사업법에 의한 고용 피고용 관계를 설립하여야 한다. 이로 인해 임대사업을 하는 극장주는 의무적으로 창작진과 실연진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일부를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피고용인도 따르도록 한다.

둘째, 기술제작진의 경우, 기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법적 지위가 더 상위에 있으므로, 예술인의 산업재

해보상보험법 코드에서 기술제작진을 제외하고, 예술인복지법의 수혜범위에만 포함시켜야 한다.

4.3 공연준비기간, 부업, 산재 인정

예술인이 고용보험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고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될 지라도, 해당 제도를 정상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현저히 미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사실상 예술인의 소득은 작품이 공연되는 공연일에만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경우 약 2~6개월간의 연습 기간 동안에는 재직의 증거가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 공연마다 최장 3개월의 제작준비기간을 인정해주고, 이를 근로일 수로 합산하는 특례방식이 적절할 것이다.

한편 부업하는 자의 사회보험에 관한 특례가 필요하다. 사회보험의 경우에 소득구간을 산정해서 그 금액을 부과하거나, 임금에 대한 보험요율을 징수하기 때문에 합당한 기금의 징수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예술인의 경우 사회보험의 50%를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부업하는 예술인에 의해 기금이 중복 지급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부업하는 예술가를 고용한 사업주 중 1인만 사회보험료 혜택을 받을 경우, 부업 예술가의 부업을 꺼리게 되거나, 사업주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사회보험료 지원이 오히려 예술인의 재정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 이에, 부업하는 자의 사회보험의 경우에는, 이미 사회보험료의 납부 의무를 다하고 있으므로 면제기금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한다. (단, 이 경우 각 사업장으로부터 달성하는 수익이 140만원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예술인의 산업재해의 경우, 공연 중의 사고나, 무대가 모두 세팅되고 난 이후의 리허설이 아니라면 그 재해를 인정받기 어렵다. 즉, 기술제작진을 제외한 실연진과 창작진의 경우에는 산재보험을 가입할 지라도, 재해의 인정이 어려운 것이다. 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예술에 의한 스트레스로 발생한 질병 등 다양한 방식의 산업재해를 인정해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산업재해 심사청구의 주체는, 재단이 아니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관할로 되어있다. 또한

산재보험상 과로의 판정은 통상적으로 주당 60시간 이상의 근로를 해야 인정되고 있다. 즉, 예술인은 작품으로 인해 과로사를 하게 될 경우에도 산업재해에 의한 질병판정이 어려울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출·퇴근에 의한 재해의 경우에도, 연습실을 가는 중의 교통사고나, 시장조사를 위해 외부의 장소를 방문할 경우의 재해 등 다양한 업무상 사고발생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사고에 대비하여, 각 직군별로 발생할 수 있는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최소한의 장소를 규정해놓고, 가입 시 명시하는 특례가 필요하다.

VI. 결론

본 연구에서는 예술인복지법의 쟁점과 한계를 분석하고, 연극예술인의 사회보험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사회보험법상 예술인 지위의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다. 둘째, 사회보험가입 절차는 고용노동부를 통한 우선 가입 후 문화체육관광부의 사후 심사 방식으로 변경하도록 한다. 셋째, 극장 임대인이 극단에 극장을 임대해줄 시에 기존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가입을 의무화 하도록 한다. 넷째, 예술인 근로의 특수성을 감안한 새로운 고용보험수식을 제안하였고, 다섯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등급별 보험료 산출 공식을 제안하였다. 여섯째, 제작준비기간 및 부업을 인정해주는 특례방식을 도입한다.

참고 문헌

- [1] 류종훈 외, *사회복지정책론*, pp.206-207, 학현사, 2005.
- [2] 최한준, “예술인복지법안의 법적 내용,” *문화예술경영학연구*, 제3권, 제2호, pp.3-21, 2010.
- [3] 배일성, *예술종사자의 사회보장 방안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4] 김영우, “독일의 예술인 사회보험제도에 대한 시론적 연구,” *독일학연구*, Vol.27, pp.121-139, 2011.

- [5] 김태완, 정희선, "예술인복지법 통과의 의미와 과제," 보건복지포럼, 제183권, pp.66-75, 2012.
- [6] 서희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역할 및 사업방향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 [7] 양창욱, 국내 예술인복지법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 [8] 나은, 예술인의 법적지위와 사회보장제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 [9] 한국노동연구원, 문화예술인 산재보험 적용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2.
- [10] 장홍근, "공연·무대예술인의 예술활동경력 및 증빙 실태와 함의," 노동리뷰, pp.55-73, 2012.
- [11] 최정민, 배관표, 최성락, "예술인복지법 정책결정 과정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5호, pp.243-252, 2013.
- [12] 최정민, 최성락, "예술인 복지법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만족도형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동계 학술발표논문집, pp.365-381, 2013.
- [13] 심희철, 양정호, 김현식, "문화 예술인 산재적용 확대의 보완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제3호, pp.186-194, 2014.
- [14] 윤애립, "복수의 사업주에게 노동력을 제공하는 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방안," 노동법연구, Vol.34, pp.289-319, 2013.

현택수(TaikSoo Hyun)

정회원



- 1993년 6월 : 파리 소르본느 대학 사회학과(사회학박사)
- 2010년 12월 ~ 현재 : 한국사회문제연구원 원장

<관심분야> : 문화복지정책

이정서(JeongSeo Lee)

정회원



- 2015년 2월 : 고려대 사회복지학 전공(문학박사)
- 2015년 4월 ~ 현재 : 조선이공대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 사회복지정책

저자 소개

노문이(MooNee Noh)

정회원



- 2013년 2월 : 중앙대학교 석사 수료
- 2015년 9월 ~ 현재 : 한국사회문제연구원 연구원

<관심분야> : 노동복지정책